

대전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3가단257607(본소), 2023가단257614(반소) 판결
[공사대금 등 · 지체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가영, 신상훈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황성업

변 론 종 결 2024. 8. 27.

판 결 선 고 2024. 10.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8.부터 2024. 10.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쳐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0,335,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6.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2. 2. 14. 충남 태안군 C 지상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1,074,830,000원, 착공일은 2022. 2. 23. 준공예정일은 2022. 10. 23.

지체상금율은 1/1000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선금으로 20%, 2층 골조 후 20%, 4층 골조 후 20%, 새시 후 10%, 내부 후 20%, 준공 후 10%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2022. 12. 23.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0. 23.까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2022. 10. 13. 피고 측 건축설계 사무실에 '사용 전 점검 확인증' 등 준공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2022. 10. 31.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창호공사 12,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추가로 시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원고는 2023. 1. 3.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바. 피고가 펜션 잔디비용으로 1,85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창호공사대금 12,100,000원 및 대여금 5,000,000원의 합계액에서 잔디비용 1,8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5,250,000원(= 12,100,000원 + 5,000,000원 - 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3. 8. 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4. 10.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 준공예정일인 2022. 10. 23.로부터 86일 지체한 2023. 1. 17.에서야 비로소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주위적으로는 지체상금으로 92,435,380원(= $1,074,830,000\text{원} \times 1/1000 \times 86\text{일}$)에서 위 창호공사대금 12,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0,335,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공사지연 및 재시공 등으로 128일 동안 펜션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일실수익 136,006,923원에서 위 창호공사대금 12,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1,683,552원의 일부로서 80,335,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내세우는 수차례의 수영장의 누수 여부, 피고가 펜션 영업을 위해 추가로 시행한 전기안전점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수영장의 오버폴의 추가공사 및 수영장에 이물질이 제대로 여과되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은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내지는 불완전시공에 관한 것이어서 그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이 지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내지는 불완전시공이라고 하더라도 을 제3 내지 17호증, 을 제24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 내지는 불완전시공 이유만으로 펜션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거나 일실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